

인권침해 대응지침

장기요양기관 종사자

급여 외 행위요구
폭언·폭행·상해·성희롱·성폭력

감사해요 재가센터

직원 인권침해 대응교육

○ 인권

우리 법률 중에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는 “인권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”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.

○ 인권침해

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「헌법」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, 폭행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.

1. 폭언·폭행·상해

○ 폭언: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·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행을 말합니다.

○ 폭행·상해: 폭행이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
신체에 직접 접촉,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 포함

○ 종사자 대응방법

-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
- 폭언·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하기
- 주변에 도움을 요청 또는 센터에 보고

○ 기관 대응방법

-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
-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
-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,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.

2. 성희롱·성폭력

○ 성희롱

-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

○ 성폭력

-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·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,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

○ 기관의 대응방법

[직원·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]

- 침상을 세울 때 품에 안기거나, 몸을 쓰다는 경우
- 식사 시 옆에 앉아 있어 달라
- 어르신의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음
-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,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
- 산책활동을 할 때 어두운 곳으로 이동

★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

(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있고 직원회의때 교육 실시 예정)

○ 종사자 대응방법

-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
-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.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.
-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
- ④ 외부기관((성폭력상담소, 여성노동상담소, 국가인권위원회 등)의 도움을 요청
- ⑤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.